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황명강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황명강 의원

나. 제안이유

-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설명으로 조문 수정함(안 제17조제5항).
-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상위 법령 중복 규정에 따라 조문 삭제함(안 제17조제6항).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 내 보육휴가를 부여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됨.
-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9,200명(7.7%)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합계 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잠정결과). 이러한 저출생 문제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이라는 재앙적 상황으로 심화되어 범 정부적인 대책과 함께 민간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경북도에서는 금년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갖고,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으로 ‘경북도가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돌봄’, ‘아이·가족이 행복한 완전돌봄 클러스터’,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 도입’,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등·하교 지원 시간 도입’, ‘산단 내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설치’, ‘단계적·점진적 주거비 이사지

원’, ‘청년 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동참’ 을 핵심 10대 과제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생 극복 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1)에 따라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아이의 인성발달과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등 건강한 자녀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직장인들이 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꼽았다는 설문 조사결과²⁾가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아이 낳아 키우려면...” 직장인들이 꼽은 저출생 해결책 1위는?(한국경제신문기사,

- 안 제17조제5항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의 분할 사용 가능횟수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며,
- 안 제17조제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³⁾에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사무환경이 조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시군, 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까지 확산되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2024. 3. 31.)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1]

2023년 시도별 출산율 현황⁴⁾

시도	출생아 수 (천명)	합계 출산율 (명)	합계 출산율 낮은 순위	비 고
계	230.1	0.72		
서울	39.4	0.55	1	
부산	12.9	0.66	2	
대구	9.4	0.70	4	
인천	13.7	0.69	3	
광주	6.2	0.71	5	
대전	7.2	0.79	8	
울산	5.1	0.81	10	
세종	2.8	0.97	16	
경기	68.8	0.77	6	
강원	6.7	0.89	14	
충북	7.6	0.89	14	
충남	9.4	0.84	12	
전북	6.6	0.78	7	
전남	7.8	0.97	16	
경북	10.2	0.86	13	
경남	13.1	0.80	9	
제주	3.2	0.83	11	

4)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통계청 보도자료, 2024. 2. 27.)

[참고자료 2]

광역자치단체 장기재직 휴가관련 조례현황

구분	1년 이상 5년 미만 (일수/분할)	5년 이상 10년 미만 (일수/분할)	10년 이상 20년 미만 (일수/분할)	20년 이상 30년 미만 (일수/분할)	30년 이상 (일수/분할)
서울	×	○(5일)	○(15일)	○(25일)	○(25일)
부산	×	×	○(10일)	○(20일)	○(20일)
대구	×	×	○(10일)	○(20일)	○(20일)
인천	×	○(5일/1회)	○(10일/2회)	○(20일/4회)	○(20일/4회)
광주	×	×	○(10일/4회)	○(20일/4회)	○(20일/4회)
대전	×	○(5일/1회)	○(10일/2회)	○(20일/4회)	○(20일/4회)
세종	×	×	○(10일/4회)	○(15일/4회)	○(20일/4회)
울산	×	×	○(60일)		
경기	×	×	○(10일/2회)	○(20일/4회)	○(20일/4회)
강원	×	○(10일)	○(15일)	○(20일)	○(20일)
충북	×	○(5일)	○(10일)	○(20일)	○(20일)
충남	○(3일/2회)	○(5일/2회)	○(10일/8회)	○(20일/8회)	○(30일/8회)
전북	×	×	○(10일)	○(20일)	○(20일)
전남	×	×	○(10일/3회)	○(20일/3회)	○(20일/3회)
경북	×	○(5일/2회)	○(10일/4회)	○(20일/6회)	○(20일/6회)
경남	×	×	○(10일)	○(20일)	○(20일)
제주	×	○(5일)	○(10일)	○(20일)	○(20일)